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(3.13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또한,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(주)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류태열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박기현 (02-3145-7306)
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신규종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차도식 (02-3145-7730)
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한진희 (02-3149-0361)
		담당자	팀 장	심수나 (02-3149-0368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5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4.3.13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피노텍</p> <p>결산기 : 2018.12.31. 2019.12.31.</p> <p>코넥스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미기재 (’18년 9,754백만원, ’19년 3,63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,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누락함</p> <p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8년 9,754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</p> <p>- 검찰통보 (회사, 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</p> <p>- 시정요구</p> <p>대현회계법인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</p> <p>- (주)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(주)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</p> <p>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8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지란지교시큐리티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</p> <p>코스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매출액 과대·과소계상 (’17년 1,831백만원, ’18년 2,133백만원, ’19년 2,207백만원, ’20년 △1,96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매출액을 과대·과소계상함</p> <p>② 종속회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’17년 554백만원, ’18년 192백만원, ’19년 605백만원, ’20년 58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</p> <p>③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’17년 5,507백만원, ’18년 4,447백만원, ’19년 6,573백만원, ’20년 4,44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</p> <p>④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 과대계상 (’17년 5백만원, ’18년 19백만원, ’19년 907백만원, ’20년 919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</p> <p>- 검찰통보 (회사, 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주지란지교시큐리티	<p>【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상품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7년 5,507백만원, ’18년 4,447백만원, ’19년 6,573백만원, ’20년 4,44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상품매출에 대한 재고위험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(주)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에스비더블유 생명과학(주)</p> <p>결산기 :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</p> <p>코스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전자 부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(’18년 8,441백만원, ’19년 △8,441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므로써,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함</p> <p>②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(’18년 4,354백만원, ’19년 2,328백만원, ’20년 1,524백만원, ’21년 1,52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</p> <p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8년 8,441백만원, ’19년 △8,441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해임 및 면직권고 상당 (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</p> <p>- 검찰고발 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</p> <p>대주회계법인 :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</p> <p>-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한솔아이원스㈜</p> <p>결산기 :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</p> <p>코스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반도체 및 디스 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유형자산 허위계상 (’13년 13,960백만원, ’14년 21,807백만원, ’15년 32,004백만원, ’16년 51,792백만원, ’17년 53,037백만원, ’18년 51,071백만원, ’19년 43,077백만원, ’20년 39,781백만원, ’21년 37,259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, 외주뢰 제작·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</p> <p>②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(’13년 3,846백만원, ’14년 4,246백만원, ’15년 4,446백만원, ’16년 4,402백만원, ’17년 4,317백만원, ’18년 4,232백만원, ’19년 4,147백만원, ’20년 1,370백만원, ’21년 1,32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</p> <p>③ 매출 허위계상 (’18년 7,618백만원, ’19년 8,838백만원, ’20년 8,838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았으나,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</p> <p>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(’15년 16,427백만원, ’16년 9,130백만원, ’17년 4,538백만원, ’18년 10,292백만원, ’19년 4,411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음</p> <p>⑤ 증권신고서 기재위반</p> <p>- 회사는 ’16.1.5. 및 ’17.9.21.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해임권고 상당 (前대표이사 2인, 前담당임원 2인)</p> <p>- 검찰고발 (前대표이사 2인, 前담당임원 2인)</p> <p>- 검찰통보 (회사)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제이더블유바이오 사이언스㈜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의료용 기기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 등 과대계상 (‘16년 4,368백만원, ‘17년 7,214백만원, ‘18년 8,563백만원, ‘19년 8,767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과대계상함</p> <p>②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 (‘18년 7,769백만원, ‘19년 9,33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 등에 대한 관리·평가 소홀로 인해,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</p> <p>③ 유효기간 미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(‘18년 1,792백만원, ‘19년 97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장기간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,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㈜	<p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8년 7,769백만원, ‘19년 9,33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감사는 회사의 재고자산 실재성 및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<p>② 유효기간 미경과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8년 1,792백만원, ‘19년 97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감사는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<p>삼정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징금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%-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(주)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(주)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4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2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